

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기기 선정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	
제 230 조	<p>(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)</p> <p>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(區分圖)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·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. 인화성 고체를 제조·사용하는 장소 <p>② 사업주는 제 1 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</p>
제 311 조	<p>(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)</p> <p>① 사업주는 제 230 조제 1 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·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,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·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사업주는 제 1 항의 방폭구조 전기 기계·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·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

※ 제 230 조(폭발위험장소의 구분) 한국산업표준 : KS C IEC 60079-10

※ 제 311 조(폭발위험장소의 전기설비) 한국산업표준 : KS C IEC 60079-14

고용노동부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·심사·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
 제 24 조 :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가스 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「한국산업표준(KS)」에 따라 "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기기 선정